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The Effect of the Income Security in the Old Age
from the National Pension, the Retirement Pension
and the Private Pension by the Income Classes

임 병 인*

Lim Byung-In

강 성 호**

Kang Sung-Ho

본 연구는 고령화 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3대 주요 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를 소득대체율 개념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추정결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3대 주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합산한 결과 20년 가입기준으로 최저 54%에서 최고 135.7%, 40년 가입기준으로 최저 110.8%에서 최고 168.2%로 추정되었다. 퇴직연금 대상이 아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 때 20년 가입기준으로 최저 38.2%에서 최고 118.5%, 40년 가입기준으로 최저 78.0%에서 최고 135.4% 수준에 이르렀다.

추정결과는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3대 연금의 가입유인을 높일 정책수단이 필요하고, 2대 또는 3대 연금을 모두 가입할 경우 은퇴 직전소득기준으로 모든 소득계층에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이 보장되어 정부의 미래 재정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결론은 개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경제행위는 공적보험인 국민연금 외에 개인 또는 퇴직연금 등의 사적 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국문 색인어: 개인연금,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효과, 소득대체율, 퇴직연금

* 안동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billforest@hanmail.net)

**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powerksh0515@hanmail.net)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 퇴직연금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제도적으로 완비된다. 그럼에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과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추가로 개인연금을 더 불입해야 하는가가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각종 언론들도 노후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 추정치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 “남부럽잖게 살려면 13억, 적당히 즐기며 살 땐 7억, 빠듯하게 살더라도 3억”이 필요하다는 보도도 있었다(『조선일보』, 2005. 9. 12). 그러나 사람마다 소득이나 소비 성향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노후자금 액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더구나 힘들여 준비한 노후대비 소득이 물가상승으로 가치가 하락하거나 금융기관의 파산가능성 및 운용수익률의 변동, 제도변경가능성 등 현재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까지 고려하면 더욱 걱정스럽다.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인 가족 최저생계비 월 60만원을 최소한의 ‘생존비용’으로 가정하여 60세에 은퇴 후 부부가 80세까지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가 현재가치 기준으로 1억 4,600만원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조선일보』, 2005. 9. 12). 월 소비지출액을 96만원으로 올리면 기본 생활비는 2억 7,000만원대로 증가한다. 현재 30대 초반 맞벌이 부부(월소득액 400만원)가 계속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불입한 뒤 60세에 은퇴하고 부부 모두 80세까지 생존하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수급액은 현재가치로 2억 3,000만원 정도 된다. 월 60만원을 지출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수급액만으로 충분하겠지만, 월 96만원으로 지출액수준을 올리면 약 4,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된다. 결국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이후 일정 수준의 소비지출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노후소득보장효과가 미흡한 공적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연금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장동한, 2003, 2004; 윤석명, 2004 등).

우리나라는 개인연금을 이미 1994년 6월에 (구)세제적격 개인연금이란 명칭으로 도입하여 보험권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에서 판매해오다가 연금세제 개편과 함께

(신)세제적격 개인연금으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불안과 퇴직연금의 미성숙 등에 비추어 노후소득 보장장치로서 개인연금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 때문에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저축률이 뚜렷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김기범, 2005), 이 같은 현상은 소비하락으로 이어져 경기침체의 장기화 우려까지 제기할 수 있지만,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에 대한 불안과 함께 연금수급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사적 저축률을 높이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다¹⁾.

한편 2005년 12월부터 시행될 퇴직연금은 근로자 위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보다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2005년 5월 현재 국민연금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근로자) 비율은 45.9%(약 775만), 지역가입자 비율은 54.1%(약 907만명)인 것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데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노후소득보장 장치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저소득 자영업자들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고려하지 않는 한, 향후 이들을 중심으로 빈곤문제가 대두되어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권문일, 2004; 최현수, 2002).

이러한 현황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그러나 국내의 연금 관련 연구에서 공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를 상호 비교하고, 이를 소득계층별로 파악,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는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장기간 이루어져졌지만 2005년에 이르러서야 관련 법령이 제정된 것도 주요 이유이지만 자료제약 또 다른 이유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시점의 자료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표준소득월액 및 가입자를 이용한 Simulation 분석을 통해 각 연금별 및 종합적 효과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45등급체계 내에서 20년과 40년 가입을 전제로 국민연금, 퇴직,

1) 이와 관련하여 공적연금의 증가는 사적저축을 구축한다는 연구(강성호·임병인, 2005)도 있으나, 불확실성 및 유산을 고려한 모형에서는 사적 저축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연금의 소득보장효과를 소득대체율 측면에서 살펴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개괄적으로 진단한다. 제3장에서는 추정방법과 가정 등을 설명하고, 소득대체율 추정결과를 소득계층별로 비교분석한다. 또한 3대 연금의 연계를 가정하여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해 논의한다. 제4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분석결과에서 도출한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한다.

Ⅱ. 기존 연구 및 3대 연금제도 개요

1. 기존연구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공적연금만의 소득보장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공사연금제도 전체의 소득보장효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개별적 연구 결과를 범주별로 살펴보고, 기존연구에 대한 함의를 정리한다.

첫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권문일(2000)²⁾은 국민연금의 50~54세 가입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 조사하여 빈곤완화효과, 수익, 소득대체율의 국제비교, 여타 노후소득원과의 비중 등을 분석하였다. 그는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노후 빈곤완화 역할이 미약하므로 여타 사적부양체계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소득대체율의 경우 퇴직금

2) 권문일(2004)은 국민연금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분석과 관련하여, 노후 총자산에 자가의 포함여부에 따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달라짐을 분석하고 있다. 즉, 총자산에 자가가 포함된 경우 국민연금 빈곤완화효과는 중간 및 저소득계층에서 빈곤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자산에 자가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저소득계층의 빈곤완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 합산할 때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였다. 홍경준(2005)은 각국의 공적연금 적용에 따른 노령인구의 빈곤완화 효과를 Luxemburg Income Study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공적연금유형에 따라 노인인구의 빈곤수준 및 변화추이에 차이가 있고, 노령인구의 빈곤율은 공적연금의 발전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노인인구의 빈곤완화를 위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급여의 관대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급여의 관대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불안정에 대해서는 급여 관대성과 선별성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의 공적연금제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³⁾. 석재은·김용하(2002)는 연금제도 유무에 따른 생애소득 크기 비교, 수익비 분석,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세대내, 세대간, 성별, 직역별, 수명장단별, 수급시점별, 보험료 수준별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성숙되어 갈수록 소득대체율이 개선되지만, 개인의 생애전체를 두고 볼 때 공적연금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므로 사적연금의 보충이 필요함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공적연금의 수익비가 모든 계층에서 1 이상이어서 재정불안정이 초래되므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다소 역설적으로 제도의 수용성을 위해 모든 계층에 수익비가 1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공적연금의 수익비 분석 및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로 문형표·유일호(1994), 김용하(1994), 오창수(1994), 김용하·석재은(1999) 등의 연구가 있는데, 주로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안모색을 위하여 수익비와 내부수익률 등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 결과의 공통점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초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의 수익비 및 내부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아 연금재정의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개인연금의 역할을 강화시켜 공적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국내 연구로는 장동한(2005), 문숙재·김연정(1997) 등이 있다. 장동한(2005)은 개인

3) 즉, 일반적으로 선별성이 클수록 빈곤율이 높아진다는 '재분배의 역설'과 관련하여, 분석 대상 8개국 중 캐나다는 예외적으로 나타났는데, 유사수준의 노령 빈곤율을 가진 다른 나라에 비해 고소득계층에 대한 관대성은 더 낮은 반면, 선별성은 높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좌제도를 포함한 다층연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가 크므로 개인구좌제도 도입을 통한 연금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⁴⁾. 문숙재·김연정(1997)은 개인연금이 도입된 1994년의 대우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에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못한 계층을 중심으로 높은 개인연금 가입확률을 보여 개인연금이 노후소득보장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30~40대와 같은 생애중반기에 노후소득준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으로 주장하였고, 이는 소득공제 등의 유인책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상의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있음을 실증하고 있으나, 사적노후보장수단이 보완된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더 합리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와 달리 공·사적 연금에 대한 개별적 접근법을 지양하고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3대 주요 연금(국민·퇴직·개인연금)을 비교하고 이를 종합한 노후소득보장효과를 분석한다.

2. 3대 연금제도 개요 및 현황

3대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효과를 논하기에 앞서 각 연금의 제도적 특성,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가. 연금제도의 개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적연금제도가 기본이

4) 그가 주장하는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을 60%에서 40%로 낮춤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퇴직금 제도를 강제적 기업연금 제도로 전환하므로 필요보험료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 셋째, 공적연금과 퇴직 연금을 통합함으로써 적정수준의 급여수준이 보장된다. 넷째,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섯째, 연금체계의 다층화를 통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제도개선에 따르는 전환비용(transition cost)이 발생하고 연금가입자들의 투자리스크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고⁵⁾, 사업장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제도가 활용 가능하고 자영업자들도 국민연금 외에 자발적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인데, 이 중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분담하고, 지역가입자는 2005년 7월부터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⁶⁾.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수준 가입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6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으며, 수급액은 매년 소비자 물가수준에 의해 실질가치를 보장해 주고 있다. 지급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 일시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은 10년이며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이 지급된다⁷⁾.

한편 개인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으로서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⁸⁾. 개인연금은 18세 이상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월 백만원 이하(단, 3월납은 3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 가입기간은 10년 가입을 기본으로 하고 55세 이후부터 수급할 수 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가 불입한 금액의 기금수익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실상 확정기여형이다. 또한 연금수급액이 공적연금과 같이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에 의해 조정되지 않으므로 실질가치가 보장되지 않는다. 지급방식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⁹⁾.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에 대하여 논의한다. 퇴직금제도는 50여년전에 도입되었으

5)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특수직역연금에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이 있다.

6) 지역가입자는 1995년 7월 처음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로 편입되어 2000년 6월까지 3%의 보험료율을 적용 받다가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올라 2005년 7월부터 사업장가입자와 동일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7)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현재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어나 2033년에는 65세로 높아질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40대인 직장인은 62~63세, 30대 직장인은 64~65세가 되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8) 세제혜택의 적용시점의 경우, 2000년까지는 연금보험료 불입 시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연금 수급 시에 과세하지 않는 체계(TEE)였으나, 2001년부터는 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수급 시에는 과세하는 체계(EET)로 기본 원칙이 바뀌었다. 신제도 하에서 공적연금 가입자의 기여금은 전액 소득 공제되고, 개인연금 기여금은 연간 240만원(기존 연간 72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개편된 것이다.

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사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정작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오랜 기간 논의 끝에 도입된 퇴직연금이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퇴직연금은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도입하기 쉬운 5인 이상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2008~2010년 사이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퇴직연금은 노사협약에 의한 도입이 원칙이므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형태로 설계될 것이고, 노사 양측이 원하지 않을 경우 현행 퇴직금제도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보험료 수준은 현행 퇴직금제도를 준용하여 연간임금총액의 1/12(=8.33%)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급여수준은 사업장내 노사협약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노동부, 2005). 이상을 비롯한 주요 내용들을 <표 1>에 정리하였다.

나. 주요 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은 특수직역연금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과 달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입범위가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공적연금이다. 그런데 재정운영에 있어서 적립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부담과 급여가 수지상등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재정불안정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에 국민연금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여 2003년 처음으로 재정계산을 실시한 바 있지만, 여전히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 궁극적으로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급부를 줄이거나, 부담(기여)을 늘려야 한다. 최근 발표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분석(한국노동연구원·노동부, 2003)에 의하면, 현행 소득대체율(60%)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급여의 9% 수준에서 18~20%까지 보험료 부담

9) (구)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은 1994.6.20부터 도입, 판매되다가 연금제도의 과세체계 개편(연금소득세 도입)으로 2001.1.1부터 판매 중지되었다. 단, 2000.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계속불입이 가능하고 종전 소득공제기준 및 비과세 등의 기존세제를 적용받는다. 개인연금저축 판매 중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부록 2) 참조)에 근거한 연금저축이 2001.1.1부터 판매되고 있는데 이를 (신)개인연금저축이라 하며, (구)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소득세 부과, 해지가산세 부과, 소득공제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¹⁰⁾.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여 부과(pay-as-you-go)방식이나 부분적립방식 등도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금을 인상하지 않고서는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표 1〉 국민·개인·퇴직연금의 주요 내용

구분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적용대상	전국민(특수직역가입자 제외)	전국민(18세 이상)대상 임의가입	사업장 근로자 대상	
급여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종신연금 혹은 최소 5년 확정연금, 일시금	- 확정급여형(DB) · 연금: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 이상 지급 · 일시금: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	
급여구조	보험료	월 백만원 범위에서 본인 선택	- 확정급여형(DB): 적립금 -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확정기여형(DC): 연간 임금총액의 1/12	
	급여산식	노령연금: $1.8 \times (A+B) \times (1+0.05n)$ n: 20년 이상 가입연수 A: 전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 B: 본인의 전가입기간 평균소득	각 상품마다 다름 (일반적으로 시장 금리 적용한 납부금에 비례한 급여지급)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임
	급여수준	소득대체율 60% (40년 가입시 평균)	확정금리(보험), 실적배당(신탁, 은행)	- 확정급여형(DB): 현행 퇴직금(일시금)과 동일 - 확정기여형(DC): 근로자의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

10) 이와 같은 논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80년대에 사회보장급부를 크게 축소하였고 수급연령 역시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였다. 일본도 수급연령을 2001년 60세, 2014년 65세로 조정하였다.

구 분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급여구조 노령연금	연금액 조정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질가치 보장 없음	
	지급개시 연령	60세부터 지급 (2033년 이후 65세로 연장)	계약만기(10년 이상 가입, 55세 이상~77세 이하) 이후 연금수령	55세 이후 지급
	지급방식	연금형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가능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가능
기타		- 납부시 전액소득공제, 급여시 과세	- 소득공제범위(한도): 연간 불입액의 100% (연간 240만원) - 5년 이내 중도 해지시 가산세 (2% 주민세 별도)부과 - 계약기간 만료전 중도해지 및 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시 기타소득세 (20% 주민세 별도) 부과 -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5% 주민세 별도) 부과	기금의 사외적립원칙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한국노동연구원(2003. 8).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추정결과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 최고 적립금 1,715조원(2000년 불변가격으로는 603조원)에 도달하고, 2036년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한 이후 기금잠식이 급속히 진행되어 2047년에 기금이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급격한 수지구조 악화로 후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되므로 빨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부양비의 증가와 제도의 성숙으로 2030년 이후 수지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어,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2047년에 보험료수입은 총지출의 29.4%에 불과하고,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고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필요보험료율은 2050년에는 30.0%, 2070년에는 39.1%로 급증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6).

〈표 2〉 국민연금 재정전망

(단위: 10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률	보험료율	적립기금 (200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02	92,798	19,513	13,446	6,067	2,210	2,106	17,303	34.2	9.00	86,547
2010	328,694	50,080	27,739	22,341	11,094	10,921	38,986	26.1	9.00	241,995
2020	908,028	109,073	50,174	58,899	35,010	34,701	74,064	23.8	9.00	497,441
2030	1,581,638	170,648	80,235	90,413	111,103	110,576	59,544	13.7	9.00	644,728
2035	1,715,359	186,032	94,311	91,721	181,177	180,504	4,855	9.4	9.00	603,168
2036	1,702,972	189,069	97,543	91,525	201,456	200,749	-12,387	8.5	9.00	581,372
2040	1,447,808	191,224	111,041	80,184	289,188	288,329	-97,964	5.3	9.00	439,146
2047	-96,159	139,326	139,326	0	473,542	472,333	-334,216	0.5	9.00	-23,715
2050	-	154,610	154,610	0	561,966	560,567	-407,356	-	9.00	-
2060	-	201,822	201,822	0	895,032	892,859	-693,210	-	9.00	-
2070	-	271,210	271,210	0	1,286,469	1,283,095	-1,015,259	-	9.00	-

자료 :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6).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 국민연금제도가 가까운 시일 내에 근본적으로 변경되기를 기대할 수 없지만,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노후소득보장설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노후소득의 주요 원천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재정 부담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적 복지제도이면서 법정제도여서 공적 복지제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도입당시 퇴직자에 대해

공로보상의 '전별금' 성격이 강했으나, 제도가 정착되면서 '후불임금'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우여곡절 끝에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되어 시행되지만, 오래 동안 익숙하게 적용된 법정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일본의 경우 1974년 대기업의 43%가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1996년에는 5%만이 기존 퇴직금제도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퇴직연금제도를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퇴직금제도가 폐지되고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어 궁극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 노동부, 2003).

한국 퇴직금제도의 실제 적용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연금이 임의제도이면서 노후소득보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각각 50%, 39%가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한국은 30% 미만에 머물고 있다(〈표 3〉 참조).

〈표 3〉 주요 OECD 국가들의 사적연금제도 적용현황

국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제도의 강제성	임의	임의	임의	임의	강제
적용률 (경제활동인구대비)	50%	29%	39%	42% (서독만)	100%
급부형식	확정급부 확정기여	확정급부	확정급부	확정급부	확정급부
총임금대체율 (사회보장포함)	68%	68%	60%	60%	67%

주: 방하남 외(2001)에서 재인용(Turner and Watanabe, 1995, pp.14~15).

한편 현행 퇴직금제도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써 기능수행에 한계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간 퇴직 시마다 일시금으로 정산됨으로써 정년

퇴직 시까지의 보전성이 약하다는 것, 퇴직금제도의 적용이 그간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여전히 보편적이지 않고 제한적이며(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급여수준이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규모나 경영사정에 따라서 근로자계층간의 불평등이 크고, 운영상의 규제나 법적인 지급보장이 미흡하여 보장성¹¹⁾과 공공성이 크게 미흡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퇴직금제도 적용확대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적용대상 규모	적용 대상자 수	취업자 대비	경제활동인구 대비
1966	30인 이상	453	5.4	5.0
1975	16인 이상	1,448	12.2	11.7
1980	16인 이상	2,840	20.7	19.7
1985	10인 이상	3,786	23.9	24.3
1990	5인 이상	5,366	29.8	29.0
1998	5인 이상	5,786	30.1	29.7

주: 방하남 외(2001)에서 재인용.

또한 높은 이직률과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의 낮은 보전율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높은 이직률은 이직할 때마다 퇴직금이 사실상 중간 정산되는 것과 같으므로 정년퇴직 때에는 실제로 받는 금액이 적어져 퇴직 후의 소득보장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개인연금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함께 3층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요한 수단이다. 개인연금제도는 1994년부터 세제혜택이 부여된 세제적격개인연금 형태로 도입되었으며, 2000년 연금세제 개편에 따라 2001년부터 새로운 개인연금상품이 도입되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여건의 미성숙과 장기간 운용되는 상품인 관계로 보

11) 한국노동연구원·노동부(2003)에 의하면, 퇴직금은 기본생활비로 53%, 미래를 위한 저축/투자에 21% 등에 주로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편적인 상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개인연금 현황을 보면, 2001년 말 기준 생명보험, 은행, 투신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연금 계약건수는 373만건으로 총취업자의 17.7%가 가입하고 있다. 금융기관별 개인연금 보유계약건수는 보험사가 212만건으로 전체시장의 56.7%를 점하고 있으며, 은행, 투신사, 우체국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표 5〉 금융권역별 개인연금 취급실적(보유계약건수)

(단위: 천건, %)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유지율 ¹⁾
은행	1,840 (2,340)	1,740 (325)	1,617 (181)	1,801 (120)	1,486 (105)	1,340 (82)	1,309 (102)	1,334 (144)	39.2 -
생명보험	1,643 (1,893)	2,182 (1,488)	2,406 (1,079)	2,139 (548)	1,692 (257)	1,598 (208)	1,651 (292)	1,506 (26)	26.0 -
손해보험	390 (446)	664 (399)	820 (308)	753 (177)	607 (88)	582 (78)	628 (178)	611 (47)	35.5 -
투신운용	233 (187)	373 (259)	344 (61)	304 (62)	246 (7)	224 (20)	210 (7)	205 (3)	33.8 -
우체국	- -	- -	- -	- -	83 (16)	67 (9)	71 (16)	77 (16)	- -
합 계	4,107 (4,865)	4,960 (2,471)	5,187 (1,630)	4,997 (908)	4,115 (473)	3,811 (2,396)	3,869 (2,595)	3,733 (2,237)	33.2 -
(증감율)	-	20.8	4.6	△3.7	△17.6	△7.4	1.5	△3.5	-

주 : 1) 유지율 = 2001년 보유계약건수 / 1994~2001년의 신규가입건수 합계.

2) () 안은 신규가입건수.

자료 : 류건식(2004).

개인연금의 연도별 신규가입은 개인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4년에 약 487만건이 판매되어 최고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금관련 세제내용이 변경된 2001년의 경우도 24만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4년에

는 은행이 1위를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생명보험이 1위를 유지하고 있다(류건식, 2004). 이처럼 보험사가 개인연금에서 우위를 지니게 된 첫 번째 요인으로는 상품특성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사가 제공하는 개인연금상품은 공적연금과 같이 종신형으로 구성되어 단순한 저축을 넘어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둘째 요인은 설계사조직이라는 강력한 판매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비용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아 다른 금융권에 비해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약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시장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지표는 유지율이다. 1994년부터 2001년 기간 중 총 신규가입건수는 1,158만 건이었으나 785만건이 실효, 해지 등의 사유로 탈퇴하여 2001년말 기준 계약 유지율은 33.2%에 불과하다. 개인연금상품의 유지율은 은행이 39.2%, 생명보험사는 26.0%이다. 이와 같은 낮은 유지율이 개인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원래의 취지인 노후소득보장과의 거리가 멀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논의한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3대 주요연금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국민연금이 소득보장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재정불안정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둘째, 퇴직연금은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사업주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노사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과정에서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개인 연금은 경기침체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 일시금 수령 가능 및 유지율 저하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III. 추정방법과 분석결과

1. 추정을 위한 가정들

3대 연금 즉,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를 정확하게 비교

하기 위해서 제2장에서 살펴본 제도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첫째, 국민연금에서 적용하고 있는 45등급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보험료를 산출한다. 납입보험료 수준은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사업장 근로자는 전체 적용보험료 중 1/2만 부담하므로 본인부담 보험료와 전체보험료로 구분하였다. 개인연금은 현행 국민연금보험료율 9%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 시행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안』의 규정대로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소득에 8.33%를 적용하였다. 한편 추정치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의 45개 소득계층에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 비율을 가중치로 적용하였다¹²⁾.

둘째,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노후소득보장효과가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기간을 구분하였는데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20년과 40년 두 경우만으로 한정하였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 후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수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시점에서는 일찍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20년을 분석대상기간으로 가정하였고 또한 국민연금 기본가입 기간(20년)과 동일기간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 한편 현행 국민연금의 경우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이 평균 60%를 보장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3대 연금의 비교를 정확하게 하고자 40년 가입기간을 추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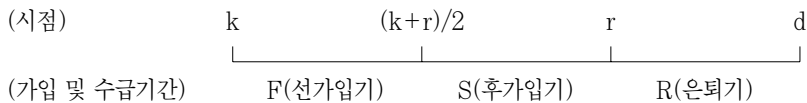
셋째, 3대 주요연금의 비교분석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추정해야 정확할 것이므로 가입기간을 <그림 1>과 같이 구분하였다. 기준시점을 가입자가 20세가 되는 k기, 종료시점은 78세 사망시점인 d기, 은퇴시기는 60세인 r기로 하였다. 20년 가입기간은 다시 두 경우로 나누었는데, 이는 가입기간과 가입시점에 따라¹³⁾ 소득보장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기간은 두 개의 20년 가입기간과 40년

12) 이는 2005년 4월 말 기준으로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전체 가입자의 소득분포 현황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는 의미로 simulation 분석이지만 실제 현황을 반영하고자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부표 1> 참조).

13) 최기홍(2005)에 의하면, 임금상승률과 할인율의 관계에 의해 기여연수에 따른 내부수익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가입시점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가입기간 등 모두 3개 유형이다. 1유형은 20년 선가입(F)한 경우로서 k시점(기준시점)에 가입하여 $(k+r)/2$ 시점 직전까지 가입하고, 이후부터 가입하지 않고 r시점(은퇴시점)에 은퇴하여 d시점(사망시점) 직전까지 수급하는 경우이다. 2유형은 20년 후가입(S)으로 k시점에서 $(k+r)/2$ 시점 직전까지는 가입하지 않고 이후부터 가입하여 r시점(은퇴시점) 직전까지 가입하고 r시점(은퇴시점)에 은퇴하여 d시점(사망시점) 직전까지 수급하는 경우이다. 3유형은 40년 가입으로, k시점에서 r시점 직전까지 가입하고 r시점(은퇴시점)에 은퇴하여 d시점(사망시점) 직전까지 수급하는 경우이다.

〈그림 1〉 가입기간 및 가입시점



넷째, 연금 수급기간은 3대 연금 모두 평균기대여명을 고려하여 60세 이후 18년간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이는 현재 시점에서 국민연금은 60세 이후부터 수급할 수 있지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5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여 수급시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간 노후소득보장 효과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수급 개시연령을 동일 기준인 60세로 가정한 것이다. 한편 개인연금도 다양한 지급형태로 판매되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종신연금형으로 가정하여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다섯째, 현행 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연금은 현행처럼 확정급여형,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으로 가정하였다. 퇴직연금은 노사합의에 따라 확정기여 또는 확정급여형 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개인연금과의 비교를 위해 확정기여형 상품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여섯째, 분석의 단순화 및 명료화를 위해 납부 및 수급기간 동안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이자율(할인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에서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기본가정은 전체 가정기간의 평균치인 물가상승률

3%, 임금상승률 5.5%, 이자율 6%로 하였다.

〈표 6〉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경제변수 가정

구 분	2002~2010	2011~2020	2021~2030	2031~2050	2051~
명목임금상승률	6.5%	6.0%	5.5%	5.0%	4.5%
명목기금투자수익률	7.5%	7.0%	6.0%	5.5%	5.0%
물 가 상 승 률	3.0%				

자료: 국민연금 발전위원회(2003. 6).

일곱째, 관리비용설정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은 국고지원 및 기금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나 국민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로(확정급여형) 되어 있으나 개인(퇴직) 연금의 경우는 기업의 이윤, 유지비, 수급비 등 사업운영비가 있으므로 차이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보험료(연금액) 대비 연간 3%의 관리비용이 드는 것으로 가정하였다¹⁴⁾. 역으로 개인(퇴직)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관리비용만큼 보조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덟째, 연금과세는 고려하지 않고 과세 전 노후소득보장 효과만을 비교·분석한다.

2. 추정방법

이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추정방법을 논의한다. 이하의 추정결과들은 국민연금에서 사용하는 45개 표준소득월액등급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지만, 설명의 편의상 소득구간을 약 50만원 단위로 구간을 정해 총 8개 등급만을 제시한다¹⁵⁾.

먼저 국민·개인·퇴직연금의 생애보험료 산출식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

14) 박상현·조준행(2002)이 설정한 기여기간동안의 유지비를 참조.

15) 45개 표준소득월액등급은 〈부표 1〉을 참조.

다. 식 (1)에 근거하여 산출된 생애보험료 수준들이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식 (1) 국민·개인·퇴직연금의 생애보험료

$$TC_{i,k} = \sum_{t=s}^{e-1} r_c W_{i,t} \times \prod_{j=k}^t \frac{(1+w)}{(1+\gamma)} \quad (1)$$

단, $TC_{i,k}$: k 시점에서의 생애보험료, i : 각 소득계층, k : 기준시점(20세),
 s : 최초가입시점, e : 가입종료시점, r_c = 보험료율,
 $W_{i,t}$: t 기의 연간임금소득, w = 임금상승률, γ = 할인율.

<표 7>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생애보험료 비교

(단위: 천원)

구 분	20년 가입(선행가입)			20년 가입(후행가입)			40년 가입기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1등급(22만원)	4,545	4,545	4,207	4,135	4,135	3,827	8,680	8,680	8,034
14등급(57만원)	10,743	10,743	9,943	9,773	9,773	9,046	20,516	20,516	18,989
23등급(113만원)	21,898	21,898	20,268	19,923	19,923	18,439	41,821	41,821	38,708
29등급(156만원)	32,228	32,228	29,829	29,320	29,320	27,137	61,548	61,548	56,966
34등급(208만원)	42,971	42,971	39,772	39,093	39,093	36,183	82,064	82,064	75,955
39등급(254만원)	55,159	55,159	51,053	50,182	50,182	46,447	105,342	105,342	97,500
42등급(294만원)	63,630	63,630	58,893	57,888	57,888	53,579	121,518	121,518	112,471
45등급(360만원)	74,372	74,372	68,836	67,662	67,662	62,625	142,034	142,034	131,460
전 체	32,912	32,912	30,462	29,943	29,943	27,713	62,855	62,855	58,175

주: 1) 개인연금 보험료율 9%, 퇴직연금 보험료율 8.33% 가정.
 2)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생애보험료에는 관리비용포함.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동일 보험료율(9%)을 가정하였으므로 생애기준으로 동일한 값이나, 퇴직연금은 8.33%의 보험료율을 가정하였으므로 조금 낮다. 가입기간이 20년이라도 현재가치기준(k 시점)으로 본 생애보험료는 달랐는데, 그 이유는 임금상승률과 할인율 가정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애보험료수준이 다르면 은퇴 후의 급여수준도 달라질 것이다.

다음은 급여산식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법령상 급여산식을 이용하였다. 식 (2)를 보면, 전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자신의 표준소득월액이 고려되어 소득재분배 효과와 소득 비례효과가 동시에 반영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지나친 급여수준의 증가를 지양하기 위해 현행 급여산식에 의한 소득대체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만을 보장하고 있어 본 연구도 이에 따랐다. 연간 급여산식은 평균소득 가입자의 은퇴시점 소득대체율이 현행 규정과 같이 60%가 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생애급여산식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급여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였고 해당식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가입시점($t=k$)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였다.

식 (2) 국민연금 급여산식

$$\begin{aligned}
 & \text{(연간)} \quad NP_{i,r} = 1.8(A+B) \times (1+0.05n) \\
 & \text{(생애)} \quad TNP_{i,k} = \sum_{t=r}^{d-1} NP_{i,r} (1+p)^{t-r} \times \prod_{j=k}^{t-1} \frac{1}{(1+\gamma)} \quad (2)
 \end{aligned}$$

단, $NP_{i,r}$: r 시점에서의 연간 국민연금액, $TNP_{i,k}$: k 시점에서의 생애 국민연금액,
 A : 연금수급전 3년간의 가입자전원의 평균소득월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
 기간 동안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 20년 초과연수, p : 물가상승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수지상등 원칙을 적용하는 확정기여형 적립방식을 가정하였으므로 식 (3)과 같이 생애보험료와 동일한 현재가치를 가지는 생애연금액이 산출된다. 다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기업의 이윤 및 직원봉급 등의 비용을 연금비용($1-C_m$)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확정급여가 아니

라는 점에서 국민연금 급여산식과 다르게 산출된다. 개인(퇴직)연금의 경우, 상품마다 연금비용이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연금수령시에 일정비율(C_m)을 관리비용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개인(퇴직)연금의 경우는 확정기여형이므로 생애급여수준이 결정된 후 이에 따라서 연간급여수준이 결정되는 형태를 띠게 되므로 식 (3)과 같이 k 시점에서 생애급여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k 시점과 r 시점에서의 연간급여수준이 결정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r 시점의 연간급여 산식을 제시한 이유는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의 소득대체율은 일반적으로 은퇴시점(r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비교를 위해 제시한 것이다.

식 (3)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연간 수급액 산정방식

$$\begin{aligned} \text{(생애)} \quad & TPP_{i,k} = TC_{i,k}, \quad NPP_{i,k} = TPP_{i,k} \times (1 - C_m) \\ \text{(연간)} \quad & PP_{i,k} = NPP_{i,k} | (d-r), \quad PP_{i,r} = PP_{i,k} \times (1 + \gamma)^{r-k} \end{aligned} \quad (3)$$

단, $TPP_{i,k}$: k 시점에서의 관리비용 포함된 생애 개인(퇴직)연금액,
 $NPP_{i,k}$: k 시점에서의 관리비용 제외한 순 생애 개인(퇴직)연금액,
 C_m : 관리비용비율, $d-r$: 수급기간,
 $PP_{i,k}$: k 시점에서의 연간 순 개인(퇴직)연금액,
 $PP_{i,r}$: r 시점에서의 연간 순 개인(퇴직)연금액.

3. 3대 연금별 소득대체율과 합산 소득대체율 분석결과

소득대체율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은퇴시점(r 시점)에서의 월 연금수급액을 은퇴직전 월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소득대체율로 정의하였다. 기본적으로 3대 연금 모두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므로 기본적으로 근로활동 초기부터 공사연금에 꾸준히 가입하는 것이 노후소득보장의 주요한 전략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¹⁶⁾.

〈표 8〉 국민·퇴직·개인연금의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 수준

(단위 : %)

구 분	20년 가입 (선가입)			20년 가입 (후가입)			40년 가입기준		
	국민연금 ¹⁾		개인 (퇴직) 연금	국민연금 ¹⁾		개인 (퇴직) 연금	국민연금 ¹⁾		개인 (퇴직) 연금
	평균 60%	평균 50%		평균 60%	평균 50%		평균 60%	평균 50%	
1등급(22만원)	100.0	98.4	18.5 (17.2)	100.0	98.4	16.9 (15.6)	100.0	100.0	35.4 (32.8)
14등급(57만원)	58.6	48.8		58.6	48.8		100.0	97.7	
23등급(113만원)	36.4	30.3		36.4	30.3		72.8	60.7	
29등급(156만원)	29.5	24.6		29.5	24.6		59.1	49.2	
34등급(208만원)	25.9	21.6		25.9	21.6		51.8	43.2	
39등급(254만원)	23.5	19.6		23.5	19.6		47.0	39.2	
42등급(294만원)	22.4	18.6		22.4	18.6		44.7	37.3	
45등급(360만원)	21.3	17.7		21.3	17.7		42.6	35.5	
전체	34.2	28.5	34.2	28.5	67.4	56.7			

주: 1) 40년 가입시 현행 소득대체율 60% 및 개정안 기준 50%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
 2) () 안의 수치는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임.

구체적으로 각 연금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첫째, 국민 연금은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가입기간만 동일하면 소득대체율은 동일하지만 개인(퇴직)연금은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점에 따라 달랐다. 또한 개인(퇴직) 연금 가입자는 식 (1)에서 알 수 있듯이 임금상승률보다 이자율(할인율)이 크면 선

16) 평균치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값이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저소득계층(1~14등급)들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한선(100%)에 적용받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반대이면 후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높게 되는데 본연구의 기본가정은 임금상승률보다 할인율(기금투자수익률)이 보다 높은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선가입의 경우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퇴직)연금 소득보장효과는 국민연금과 달리 경제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소득계층별 추정결과를 보면, 개인(퇴직)연금은 부담에 비례하여 수급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상품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소득대체율이 일정하나,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효과로 인해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다. 특히 가입기간이 40년일 경우 최저소득계층(1등급)에서 대략 14등급계층 가입자까지 모두 소득대체율이 100%였으며, 최고소득계층(45등급)도 40%수준을 상회하여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의 상한이 정해져 있어 일정기간 가입하여 소득대체율이 100%를 넘게 될 경우 초과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급여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면에, 개인(퇴직)연금의 경우는 상한선이 없으므로 장기가입에 따른 금전적 혜택이 보장된다. 이런 차이점에 유의할 때, 공사연금체계의 효과적인 설계를 위해 소득대체율이 100%를 상회하는 저소득가입자의 초과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개인연금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좋은 대안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민연금을 40년 가입할 경우, 평균소득가입자(A값=B값이 되는 가입자)의 현행 소득대체율은 60%로 보장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소득대체율 수준은 장기적으로 재정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현행 급여수준을 다소 완화하여 평균소득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를 반영하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개정될 경우의 소득대체율도 추정해보았다. 소득대체율 60%인 경우와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이 전체 기준으로 20년 가입시 5.7%p, 40년 가입시 10.7%p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다소 하락하였지만, 가입기간 및 소득계층간 노후소득보장 추세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면(〈표 8〉 참조),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이 여전히 높았지만 20년간 가입했을 경우 최저소득계층은 60% 기준의 100%에 미치지 못한 98.4%로 추정되어 1.6%p가 낮았다. 현행 제도 하에서 40년 가입시 100%의

소득대체율을 보였던 14등급도 97.7%로 약 2.3%p가 하락하였고, 최고소득계층인 45등급은 42.6%에서 35.5%(20년 가입기준은 21.3%에서 17.7%로 하락)로 약 7.1%p 낮게 추정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표 8>에서 보인 23등급 이상 계층의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개정 국민연금법(안)이 고소득계층에 비해 중하위 소득계층에게 소득대체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지금까지 소득대체율 지표를 이용해서 3대 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를 계층별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기본 가정 하에 3대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합산하여 공·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표 9> 참조). 이를 위해 합산 소득대체율을 공적연금 외에 개인 및 퇴직연금을 각각 추가로 가입하거나, 3대 연금 모두 가입했을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20년 선가입 기준으로 현행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면 최저소득계층(1등급)의 소득대체율은 100% 수준을 상회하게 된다. 20년 선가입에서 1등급에 해당되는 계층이 3대 연금 모두를 가입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135.7%에 이르게 된다. 다만, 이 계층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적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가입한다 하더라도 절대 수급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작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중상위층의 경우인 34등급(45등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대체율은 61.6%(57.0%) 수준이고 전체 평균은 69.9%에 이르러 3대 연금을 모두 가입할 경우의 소득보장수준은 평균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퇴직연금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외에 추가로 개인연금만 가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직장 가입자보다 낮아서 1등급은 118.5%, 34등급은 34.5%, 45등급은 39.8%로 추정되었다. 전체평균은 52.8%여서 3대 연금 전부 가입할 경우보다 17.1%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효과가 사업장 가입자에 비하여 불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9〉 3대 연금의 합산 소득대체율*

(단위 : %)

구 분	20년 가입(선가입)				20년 가입(후가입)				40년 가입기준				
	국민 연금	국민+ 개인	국민+ 퇴직	국민+ 개인+ 퇴직	국민 연금	국민+ 개인	국민+ 퇴직	국민+ 개인+ 퇴직	국민 연금	국민+ 개인	국민+ 퇴직	국민+ 개인+ 퇴직	
현 행 체 계 (60%)	1등급 (22만원)	100.0	118.5	117.2	135.7	100.0	116.9	115.6	132.5	100.0	135.4	132.8	168.2
	14등급 (57만원)	58.6	77.2	75.8	94.3	58.6	75.5	74.2	91.1	100.0	135.4	132.8	168.2
	23등급 (113만원)	36.4	54.9	53.6	72.1	36.4	53.3	52.0	68.9	72.8	108.2	105.6	141.0
	29등급 (156만원)	29.5	48.1	46.7	65.3	29.5	46.4	45.2	62.0	59.1	94.5	91.9	127.3
	34등급 (208만원)	25.9	44.5	43.1	61.6	25.9	42.8	41.5	58.4	51.8	87.2	84.6	120.0
	39등급 (254만원)	23.5	42.0	40.7	59.2	23.5	40.4	39.1	56.0	47.0	82.4	79.8	115.2
	42등급 (294만원)	22.4	40.9	39.5	58.1	22.4	39.2	38.0	54.9	44.7	80.1	77.5	112.9
	45등급 (360만원)	21.3	39.8	38.5	57.0	21.3	38.2	36.9	53.8	42.6	78.0	75.4	110.8
	전체	34.2	52.8	51.4	69.9	34.2	51.1	49.8	66.7	67.4	102.8	100.2	135.6
개 정 안 (50%)	1등급 (22만원)	98.4	116.9	115.6	134.1	98.4	115.3	114.0	130.9	100.0	135.4	132.8	168.2
	14등급 (57만원)	48.8	67.4	66.0	84.6	48.8	65.7	64.5	81.3	97.7	133.1	130.5	165.9

구 분		20년 가입(선가입)				20년 가입(후가입)				40년 가입기준			
		국민 연금	국민+ 개인	국민+ 퇴직	국민+ 개인+ 퇴직	국민 연금	국민+ 개인	국민+ 퇴직	국민+ 개인+ 퇴직	국민 연금	국민+ 개인	국민+ 퇴직	국민+ 개인+ 퇴직
개 정 안 (50%)	23등급 (113만원)	30.3	48.9	47.5	66.0	30.3	47.2	45.9	62.8	60.7	96.1	93.4	128.9
	29등급 (156만원)	24.6	43.2	41.8	60.3	24.6	41.5	40.2	57.1	49.2	84.6	82.0	117.4
	34등급 (208만원)	21.6	40.1	38.8	57.3	21.6	38.5	37.2	54.1	43.2	78.6	76.0	111.4
	39등급 (254만원)	19.6	38.1	36.7	55.3	19.6	36.4	35.2	52.1	39.2	74.6	71.9	107.4
	42등급 (294만원)	18.6	37.2	35.8	54.4	18.6	35.5	34.3	51.1	37.3	72.7	70.1	105.5
	45등급 (360만원)	17.7	36.3	34.9	53.5	17.7	34.6	33.4	50.2	35.5	70.9	68.3	103.7
	전체	28.5	47.1	45.7	64.2	28.5	45.4	44.1	61.0	56.7	92.1	89.5	124.9

주: * 40년 가입시 현행 소득대체율 60% 및 개정안 기준 50%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

둘째, 20년 후가입자도 선가입자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임금상승률 보다 높은 할인율의 가정으로 인해 개인(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선가입자보다 낮았다. 따라서 전체 합산 소득대체율은 동일가입기간임에도 가입시점의 경제상태 변화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함축해준다. 추정결과들을 종합하면, 개인(퇴직)연금을 조기에 가입하는 것이 은퇴시점 현재가치 기준으로 소득보장 효과가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40년 가입기준은 20년 전·후 가입기준과 추세는 동일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대체율 상한을 적용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3대 연금을 모두 가입할 경우의 소득대체율은 1등급 168.2%, 34등급

은 120.%, 45등급은 110.8%, 전체평균은 135.6%로 나타났다. 따라서 40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추가로 개인 및 퇴직연금을 가입한다면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가입자 모두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이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3대 연금 소득대체율을 합산한 결과를 살펴본다(〈표 9〉 참조). 첫째, 20년 선가입기준으로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면 1등급의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100% 수준을 상회하여 134.1%가 되어 소득대체율 60% 기준의 135.7%에 비해 미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34등급(45등급)에 속하는 계층들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61.6%(57.0%) 수준에서 57.3%(53.5%)로 하락하여 소득이 더 낮은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큼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의 비교결과 및 20년 후가입자의 비교결과도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이미 언급하였듯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축소시켜도 3대 연금을 모두 가입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소득대체율이 100%를 초과하였다. 즉, 최저소득계층인 1등급의 168.2%, 34등급은 111.4%, 45등급은 103.7%, 전체평균은 124.9%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연금기준 소득대체율을 낮추더라도 추가로 개인 및 퇴직연금을 가입한다면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가입자 모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적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 두 개의 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최소한 68.3% 이상의 소득대체율을 실현할 수 있어 노후소득보장에 큰 무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Ⅳ.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3대 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를 개별적인 소득대체율과 3대 주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합산한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본가정 하의 분석결과를 소득계층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일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높았고 개인(퇴직)연금은 계층과 무관하게 동일하였다. 국민연금만으로

소득대체율이 100%인 저소득계층도 있지만, 개인 및 퇴직연금은 20년 가입인 경우 약 16.9~18.5%, 40년 가입은 35.4% 수준이었다. 3대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합산하면, 사업장가입자일 경우 20년 가입이라도 39등급(254만원)도 거의 60%에 이르고 있으며, 40년을 가입하면 전 소득계층에서 100%를 초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가입자는 퇴직연금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만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바, 20년 가입 기준으로 23등급이 53.3~54.9%, 40년 가입기준은 전 소득계층에서 60%수준을 넘었다. 요약하면, 20년 가입이라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가입한다는 전제가 충족된다면 노후소득이 상당부분 보장될 것이며, 40년을 가입하면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최고소득층(45등급)에서도 7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는 개인연금을 국민연금 이외에 가입한다면 20년 가입은 최저 약 40%에서 118.5%에 이르고, 40년 가입은 약 78.0~135.4%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소득보장효과가 크지만, 3대 연금 모두 또는 2대 연금만 가입하더라도 가입기간이 길면 노후소득보장에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분석결과들은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개정논란에 맞추어 50%로 낮추었을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 가입을 오랫동안 가입해야 하는 것이 좋으므로 이들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이 열등한 위치에 있는 지역가입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개인(퇴직)연금을 조기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 역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은 현행 국민연금 급여수준(소득대체율 60%)을 개정안 수준(소득대체율 50%)으로 낮추더라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에 의하면, 개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경제행위는 공적보험인 국민연금 외에 개인 또는 퇴직연금 등의 사적 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임을 시사해준다.

참 고 문 헌

- 강성호·임병인, 「공적연금의 민간저축 구축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가구특성별 접근」, 『경제분석』, 제11권, 제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5.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 2003. 6.
- 권문일, 「국민연금에 대한 수익분석」,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41권, 2000(여름호).
- _____, 「국민연금제도의 빈곤완화 기대효과」, 『사회복지정책』, 제18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4.
- 김기범, 「고령화시대 저축 행태 변화」, 『주간경제』, 제841호, LG경제연구원, 2005. 7. 15.
- 김용하, 「연금보험의 적정재정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42권,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4.
- 김용하·석재은, 「국민연금제도 전개의 한국적 특징과 지속가능성」,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7호, 1999.
- 노동부, 『퇴직연금제의 주요내용 및 활성화 방안(교육교재)』, 2005.
- 류건식,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비교분석』, 보험개발원, 2004. 5.
- 문숙재·김연정, 「가계의 개인연금 보유 여부와 불입액의 영향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1997.
- 문형표·유일호,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1994.
- 박상현·조준행,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투자가치 평가」, 『Actuarial Note』, 국민연금연구센터, 2002.
- 방하남·김원식·김호경·이호영·신기철,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 석재은·김용하, 「국민연금의 소득보장효과에 대한 Simulation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2.
- 윤석명,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선진국의 연금제도 개혁사례」, 『월간 경영계』, 제311권, 한국경영자협회, 2004.
- 오창수,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1994.
- 장동한,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 홍콩과 대한민국의 비교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

- 15권, 제3호, 2003.
- _____, 「개인구좌 제도의 도입을 통한 우리나라 연금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67집, 한국보험학회, 2004.
- _____, 「개인구좌제도의 도입을 통한 우리나라 연금시스템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70집, 한국보험학회, 2005.4.
- 『조선일보』, 2005. 9. 12.
- 최기홍, 「우리나라 국민연금 내부수익률의 기여기간에 대한 비교정태 특성」, 『공공경제』, 제10권, 제2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5. 11.
- 최현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 『한국노년학』, 제22권, 제3호, 2002.
- 홍경준, 「공적연금체계의 빈곤완화 효과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2호, 사회보장학회, 2005. 6.
- 한국노동연구원·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실행방안(Ⅱ)』, 2003.
- Turner, J.A. and N. Watanabe, *Inter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Private Pension Polici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1995.

Abstract

This study estimates the replacement ratio, the internal rate of return, the benefit-to-cost ratio of three pensions. i.e., the national pension, the retirement pension, and the private pension, and compares them with one another. Several findings emerge from the empirical results using a simulation method. First, the poorer the subscriber, the higher the replacement ratio, the internal rate of return, the benefit-to-cost ratio in the national pension. However, three estimates by the income classes in the retirement- and private pension are equal. Second, summing up the replacement ratios of three pensions, the company workers under the national pension scheme have the lowest estimate of 54% and the highest estimate of 135.7% on the basis of a twenty-year-long subscriber, and the lowest estimate of 110.8% and the highest estimate of 168.2% under a forty-year-long basis. Meanwhile, the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in the national pension have the lowest estimate of 38.2% and the highest estimate of 118.5%, and the lowest estimates of 78.0% and the highest estimates of 135.4% under a twenty- and forty-year-long subscriber, respectively. These results imply the following things: first, the incentive systems for purchasing three pensions all together more need to be implemented. Second, the sufficient income security during the old age with the public or the private pension schemes is more likely to lessen the government finance burden in the future.

※ Key Words: effect of the income security in the old age, income replacement ratio, national pension, private pension, retirement pension

【부록】

〈부표 1〉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45등급

등급	소득월액		표준소득월액	가입현황(2005.4)
1	225,000미만		220,000	8,578
2	225,000이상	235,000미만	230,000	611
3	235,000이상	245,000미만	240,000	536
4	245,000이상	255,000미만	250,000	1,191
5	255,000이상	265,000미만	260,000	1,558
6	265,000이상	280,000미만	270,000	1,723
7	280,000이상	300,000미만	290,000	2,694
8	300,000이상	325,000미만	310,000	6,457
9	325,000이상	355,000미만	340,000	8,541
10	355,000이상	385,000미만	370,000	28,918
11	385,000이상	420,000미만	400,000	38,486
12	420,000이상	460,000미만	440,000	33,110
13	460,000이상	500,000미만	480,000	36,266
14	500,000이상	545,000미만	520,000	117,340
15	545,000이상	595,000미만	570,000	188,302
16	595,000이상	645,000미만	620,000	296,621
17	645,000이상	700,000미만	670,000	370,641
18	700,000이상	760,000미만	730,000	526,496
19	760,000이상	820,000미만	790,000	479,043
20	820,000이상	885,000미만	850,000	563,381
21	885,000이상	955,000미만	920,000	535,318
22	955,000이상	1,025,000미만	990,000	1,012,444

등급	소득 월액		표준소득월액	가입현황(2005.4)
23	1,025,000이상	1,095,000미만	1,060,000	1,064,280
24	1,095,000이상	1,170,000미만	1,130,000	570,952
25	1,170,000이상	1,250,000미만	1,210,000	553,656
26	1,250,000이상	1,335,000미만	1,290,000	443,494
27	1,335,000이상	1,425,000미만	1,380,000	382,792
28	1,425,000이상	1,515,000미만	1,470,000	416,843
29	1,515,000이상	1,610,000미만	1,560,000	316,770
30	1,610,000이상	1,710,000미만	1,660,000	310,254
31	1,710,000이상	1,810,000미만	1,760,000	281,197
32	1,810,000이상	1,915,000미만	1,860,000	253,348
33	1,915,000이상	2,030,000미만	1,970,000	301,965
34	2,030,000이상	2,135,000미만	2,080,000	212,980
35	2,135,000이상	2,245,000미만	2,190,000	211,669
36	2,245,000이상	2,360,000미만	2,300,000	198,948
37	2,360,000이상	2,475,000미만	2,420,000	174,510
38	2,475,000이상	2,600,000미만	2,540,000	192,306
39	2,600,000이상	2,730,000미만	2,670,000	167,269
40	2,730,000이상	2,870,000미만	2,800,000	157,437
41	2,870,000이상	3,010,000미만	2,940,000	157,165
42	3,010,000이상	3,150,000미만	3,080,000	124,800
43	3,150,000이상	3,310,000미만	3,230,000	134,541
44	3,310,000이상	3,450,000미만	3,380,000	103,041
45	3,450,000이상		3,600,000	1,287,391
계				2,275,863